

답 변 서 A10

사 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원고(항 소 인) 김명호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항소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1. 먼저 교수지위확인을 구하는 원고(항소인, 이하 “원고”라 합니다)의 청구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입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이유에서 ① 특별법이 재임용심사의 부당성 여부만 다룰 수 있다는 것만을 보장할 뿐이고 복직보장, 손해배상 등에 대해 명시된바가 없어

특별법이 부당재임용탈락교수의 구제를 위한 것이라는 원심판단은 근거가 없고, ② 헌법재판소의 2002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은 임용권자의 해고자유를 제한하는 취지이므로 이와 달리 재임용권자의 해고의 자유 측면을 전제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기대권을 부인한 원심법원의 판단기준은 위헌,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3. 그리고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4가지 점에서 모두 판단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은 원고의 1심에서의 주장순서에 따라 조목조목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지극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는 구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당연히 소급 적용이 인정되고, 위 결정의 취지가 임용권자의 해고자유를 제한하는 취지이고 개정신법은 위 취지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단순한 절차상 하자 등도 위법한 것이거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원고의 연구실적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는 그 자체만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므로 원고의 재임용탈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부당하거나 주장자체로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성적평가방법에 대한 원심법원의 사실인정에 대해 학칙에 근거규정이 없다거나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학점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원고가 학생들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자의적으로 평가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재임용거부결정의 동기에 대해 원고가 3가지 증거를 제시하여 원고의 재임용탈락이 95학년도 본고사 수학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성임을 입증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증거들은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항소이유는 모두 법리오해나 사실관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하거나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4. .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재 원
정 재 응
최 수 령
이 동 욱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귀중